

충청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종교단체(민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흔함. 이하 같다)가 의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,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면제대상)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며, 동 부동산을 계속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. 다만, 도청소재지 시 지역내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하는 경우의 등록세와 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조(사무처리의 위임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 객체를 관할하는 시장(군수)이 처리한다.

제4조(면제신청)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(군수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시장(군수)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